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○ 서울시는 노후·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, 준공기준 추진실적은 자율주택정비사업 5개소,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, 소규모재건축사업 준공사례 없음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.

- 이에 최근 개정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,
-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과 건축규제 완화지역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,
-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